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11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홍기원·한민수·손명수

이연희 • 이기헌 • 윤종군

천하람 • 윤후덕 • 김영배

송옥주 · 서미화 · 박홍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민간개발사업시행자"라 함)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 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1조 신설).

법률 제 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를 "공급하여야 한다"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는 공급받은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벌칙) 제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 또는 승인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			
의 부담) ① (생 략)	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	2			
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u>공급하고,</u> 시·도는	<u>공급하여야 한다</u> . <u>이 경</u>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우 시・도는 공급받은 학교용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u>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u>			
으로 하여야 한다. <후단 신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			
<u>설></u>	<u>다.</u>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1조(벌칙) 제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공급하지			
	<u>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u>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u> 처한다.</u>			
<u>제11조</u> (과태료) (생 략)	<u>제12조</u> (과태료) (현행 제11조와			
	같음)			